제95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침수 사실 보고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신설(신설) ○ 침수사실 보고 의무 미이행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 정지 기간 규정(1차 10일, 2차 30일, 3차 90일) ▶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2.침수 사실 전송 의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신설(신설) ○ 침수사실 전송 의무 미이행 정비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규정(1차 10일, 2차 30일, 3차 90일) ▶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	1.비중요 2.비중요
2	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수시검사의 신청 및 연기(신설) ○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신청기한 –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,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치 사용 전에 수시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 ○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연기요건 및 기한 규정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수시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연기요건 규정 –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수시검사 실시 통보일 이전에 연기신청하도록 기한 규정 ㅇ 기계식주차장 연기 사유 해제 시 지체 없이 수시검사를 받도록 규정 ▶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 2.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(신설) ㅇ 지정인증기관 지정요건 – (법인형태)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– (기술인력) 기계 · 전기 분야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(석사 2년, 학사 5년) 소유자, 기계 ·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(7년)을 소유한 자를 포함하여, –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및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상기 자격에 상당하는 자격 ·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5명 이상 상시인력으로 보유 ▶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과 보수업자가 가입할 보험(신설) ○ 주차장관리자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관련 준수사항 – (보험종류)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– (보험가입금액) ①물적 손해 1억원, ②사망시 1.5억, ③부상시 3천만원, ④후유장애시 1.5억, ⑤사망, 부상 또는 후유장애 동시 해당할 경우 각 경우를 합산 및 상계 – (보험가입기간) 사용감서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기계식주차장치 운영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 – (보험가입대상)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, 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각 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인 경우 – (보험가입사실 제출) 보험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14일 내 증명서류를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,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해당 서류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– (보험회사의 계약체결 거부사유) 제재처분 ·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,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, 보험회사가 「상법」 제650조 제1항 · 제2항, 제651조, 제652조 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▶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대상 기준(신설) ㅇ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 하여금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▶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2.전담기관 지정요건(신설)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–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. 공공기관 나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 다. 그 밖에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·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 – 2.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▶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중요 6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협회의 설립인가 절차(신설) ㅇ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융합사업자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함 ▶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4.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(신설) ㅇ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– 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– 2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부서, 인력, 자금 및 물적 시설을 확보할 것 ▶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5.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 기준(신설) ㅇ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하여금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▶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6.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신설) ○ 지역별로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 –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시: (1차) 지정취소 – ②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: (1차) 경고 → (2차) 해당 업무정지 3개월 → (3차) 지정취소 – ③ 지원센터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: (1차) 경고 → (2차) 업무정지 3개월 → (3차) 지정취소 – ④ 과기부 장관이 위탁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 수행 시 지원받은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: (1차) 업무정지 1개월 → (2차) 업무정지 3개월 → (3차) 지정취소 ▶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	
4	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안전교육의 시행(신설) ○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(이하 ‘수행단체’)가 항공관련업무 종사자(이하 ‘종사자’)에게 수행할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○ 연 12시간 이상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– 안전교육 시 표준작업절차, 안전수칙 및 주요 사고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사례와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지방항공청장이 요청할 경우 안전관리기준 위반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– 특별안전교육 시 해당 위반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, 피해 사례와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 ㅇ 교육 종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결과를 지방항공청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함 ▶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3	
5	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요건(신설) ㅇ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규정 – (업무) 해당 기관·단체(이하 ‘기관 등’)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지원에 관한 업무 포함 – (조직·인력)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*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7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– (시설)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 및 시설 구비 ▶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이용자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의무(신설) 〈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〉 ○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선불충전금관리기관 제한, 선불충전금 운용방법 제한 등 개정 법에서 신설된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세부 방식 설정 –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치의 경우 은행·체신관서,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(은행·보험 포함),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사로 규정하고,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를 규정 – 선불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은행 예치, 국채증권·지방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 – 별도관리 방식 중 지급보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이용자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 – 선불업자가 매 영업일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고, 선불충전금의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선불충전금 관리상황 점검 방식 설정 〈선불충전금 우선 지급 절차〉 ○ 개정 법에 따르면 유사*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	1.중요 2.중요 3.중요 4.중요 5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, 관련 우선 지급 세부 절차 규정 * 선불업자가 허가·등록의 취소·말소, 해산의 결의, 파산선고, 전자금융업무의 정지명령을 받는 등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–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하는 자 및 통지받아야 하는 자를 설정하고, 이 경우 이용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,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 〈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방법 〉 ○ 개정 법에서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, 세부 고지 내용 사항 및 고지 방법 구체화 ▶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,제13조의3,제13조의5,제13조의6,제13조의7,제13조의10 2.선불업자 등에 대한 감독(강화) 〈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 확대 〉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소비자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, 법률상 독립법인인 지주회사 · 자회사 · 모회사간 통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호 대상으로 포섭하고, 영세 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 설정 〈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〉 ○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 ▶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조,제15조제22조의12 3.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(신설) 〈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절차〉 ○ 선불업자는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,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〈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〉 ○ 자본금, 사업계획 등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, 승인 결격사유 등 승인 세부 내용 규정 ▶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,제22조의3,제22조의4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및 관리 의무(신설) ㅇ (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)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,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 제공한도 등의 업무 범위 규정 ㅇ (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관리의무)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, 경영건전성 관리, 신용정보의 관리, 채권의 관리, 소액후불결제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 규정 ▶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,제22조의6,제22조의7,제22조의8,제22조의9,제22조의10,제22조의11 5.가맹점 준수사항(신설) ㅇ 가맹점으로 적격한 자만 가맹점으로 모집하도록 함 ㅇ 이용자 보호 및 건전거래 질서를 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 ▶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13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시설물 보수보강 조치 대상의 결함 범위 확대(신설) ㅇ 위해·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의 종류를 운동공간 바닥의 파손, 안전시설의 미설치 또는 파손, 배수시설의 잠금장치 또는 배수구 덮개 파손,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,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동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규정 ▶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2.비회원제 골프장 우선이용권 기준(신설) ㅇ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상품·단체·기간 등 세부 범위 기준 신설 – (상품) 숙박시설 또는 자동차 렌트 연계, 7일 이내 이용 – (단체) 연 2회 이상 정기적 이용하는 10인 이상의 단체 – (기간) 1일 전체 티오프 수*의 40/100 이내 (단, 국가·경기단체 주관 대회·공익목적 대회·청소년 연습지원은 연중 허용) ▶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이수시간(신설) ○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, 안전관리 담당자, 체육시설업자,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연간 3시간 이상 실시 ▶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 2.시설 보수·보강 미조치 시 영업정지 행정처분(신설) ○ 중대한 결함 외 결함에 대한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부과 – (1차위반) 영업정지 3일 → (2차위반) 영업정지 10일 → (3차위반) 영업정지 20일 → (4차위반) 영업정지 1개월 ▶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	1.비중요 2.비중요
9	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환경보건서비스 전담기관 지정기준(신설) ○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으로 △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법상 법인일 것 △전담인력 확보할 것 △재정·기술적 능력을 갖출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▶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8 2.환경보건서비스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신설) ○ 환경보건 서비스 전담기관이 △거짓·부당한 방법으로	1.비중요 2.비중요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지정받거나, △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및 가중·감경기준 신설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행정처분 사유</th><th colspan="3">행정처분 기준</th></tr>
<tr><th>1차위반</th><th>2차위반</th><th>3차이상</th></tr>
<tr><td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td><td>지정
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법상 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</td><td>지정
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경우</td><td>업무
정지
2개월</td><td>업무
정지
4개월</td><td>업무
정지
6개월</td></tr>
<tr><td>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</td><td>업무
정지
2개월</td><td>업무
정지
4개월</td><td>업무
정지
6개월</td></tr>
</table>
▶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9</td><td></td></tr>
<tr><td>10</td><td>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안
(경찰청)</td><td>1.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(강화)
ㅇ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'혼잡·교통유도경비업무'가 추가되는 만큼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교육과목을 조정
* 혼잡.다중운집 인파 관리, 교통안전 관리 교육과목 신설 등
▶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
2.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(신설)</td><td>1.비중요
2.비중요
3.비중요
4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보수교육의 세부적인 교육과목 규정 - 교육시간 6시간은 공통교육 2시간(경비업 법령,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), 자격의 종류별 교육 4시간(경비 실무) 으로 구성 ㅇ 교육방식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가능 ▶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3.경비지도사 ·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(신설) ㅇ 경비지도사 ·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 ▶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4,제16조의2 4.경비지도사 선임 · 해임 신고(신설) ㅇ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 선임·해임 신고하되,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은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선임 신고 ▶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5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(경찰청)	1.운전면허 취소·정지 행정처분 – 보험사기 범죄자 및 부정사용 목적 면허 대여자 등 추가(강화) ㅇ 보험사기범 및 부정사용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·정지 행정처분을 신설 – 부정사용 목적 운전면허증 대여자: 면허 취소 – 자동차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자 ▪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(상습범), 제10조(미수범)의 죄 : 면허 취소 ▪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(보험사기죄), 제10조(미수범)의 죄 : 면허 정지 ▶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2.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,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 (강화) ㅇ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, 기능검정원 자격 취소 사유 추가(안 별표34) – 자격 취소 사유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,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, 성폭력범죄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가 ▶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3조	1.비중요 2.비중요